

의안번호	제 216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268 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권광택 의원 외 6인
발 의 연 월 일	2008년 2월 22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광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
----------	-----

발의연월일 : 2008. 2. 22.

발 의 자 : 권광택 · 민경환 · 이영복
이규완 · 박종갑 · 이대원
정윤숙(7인)

1. 제안이유

- 새 정부출범과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신수종 사업 진출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 경쟁우위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을 하며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본사,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투자기업, 집단화 이전 정의

나. 투자기업이 대규모 신규 투자시 지원근거 마련(안 제33조)

다.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33조)

-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의 근로자들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

3.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련법령 : 붙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제10호부터 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 11.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이라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58(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만 해당),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및 70(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
- 12. “투자기업”이라함은 도내에 이전·증설·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 13. “집단지아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 본문을 “ 제1항 ”으로 하며, 본문중 “ 위원회 심의를 거쳐 ”를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타 시·도 기업이전 및 도내공장 증설 지원기준(제28조 및 29조 관련)

구 분	대 상	지원기준 및 지원업종
타시·도 기업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중 별표 1을 제외한 지역 및 시·도에 소재한 기업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 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p>○ 이전기업 대상 및 규모</p> <p>〈본사 및 공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본사 또는 공장) 또는 일부가 (본사 또는 공장)이전하는 경우 상시 고용 인원이 50인 이상 <p>〈기업부설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고용규모가 50인 이상, 이전후 고용규모 30인 이상 <p>〈문화산업 및 연구·개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고용규모가 30인 이상, 이전후 고용규모 30인 이상 <p>〈집단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규모가 50인 미만인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2개 이상 집단화 하여 이전하는 경우 - 우리도의 전략산업인 IT·BT·NT 등 첨단업종에 한하여 지원 다만,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의 경우는 「충청북도 지역균형 발전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균형발전 전략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자치 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업종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

구 분	대 상	지원기준 및 지원업종
도내공장	◆ 도내 소재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이고, -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

<p>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위원회 심의를 거쳐</u>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p> <p>①----- ----- ----- <삭제> ----- ----- -----.</p> <p>1~2.(현행과 같음)</p> <p>② <u>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	---

관련법령발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2008.1.24, 산업자원고시 제2008-6호)

제6조(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기업이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를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2.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인 이상인 경우
3. 해당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7, 2005.3.24, 2006.4.28, 2007.4.11>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제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 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 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